

##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

이호범\*, 광정식

영남대학교의료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Ho Beom Lee\*, Jyung Sik Kwak

*Yeung 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 An autopsy is a postmortem assessment or examination of a body to determine cause of death or manner of death. The author had surveyed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with autopsy at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from April, to May, 2007.

The total number of 286 personnel consisted of 121 men(42.3%), 165 women(57.7%). There were 57 doctors(19.9%), 71 nurses(24.8%), 83 medical technicians (29.0%), 58 office workers(20.3%), and 17 others(5.9%). 61.4% of doctors had an experience of education for autopsy more than 2 times, but nurses(1.4%), medical technicians(15.7%), office workers(1.7%), and others(5.9%) had little experience.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respondent or respondent's family member was 59.6% of doctors, 22.5% of nurses, 39.8% of medical technicians, 41.4% of office workers, and 35.3% of others.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respondent's companion was 66.7% of doctors, 33.8% of nurses, 39.8% of medical technicians, 43.1% of office workers, and 17.6% of others.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patients in general hospital was 50.9% of doctors, 8.5% of nurses, 19.3% of medical technicians, 24.1% of office workers, and 17.6% of others. Survey about a proper institution for autopsy showed 73.7% of doctors for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in medical school, and 62.0% of nurses, 59.0% of medical technicians, 46.6% of office workers, and 58.8% of others for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agreed with the forensic pathologist as the director of autopsy:98.2% of doctors, 94.4% of nurses, 96.4% of medical technicians, 89.7% of office workers, and 88.2% of others. Survey for necessity for autopsy showed responsiveness of doctors, 23.9% of nurses, 47.0% of medical technicians, 34.5% of office workers, and 23.5% of others. Survey for donation of him- or herself after death to the medical school or institution

---

Corresponding author: Jyung Sik Kwak, M.D., Ph.D.

Tel : 053-420-4885, Fax : 053-422-4712

jskwak@knu.ac.kr

for the death investigation revealed responsiveness of 22.8% of doctors, 11.3% of nurses, 24.1% of medical technicians, 22.4% of office workers, and 23.5% of others. The result of the survey questionnaire showed more negative awareness for autopsy in nurses, medical technicians, office workers, others and than doctors.

To improve the negative awareness for autopsy and settle proper postmortem inspection system, edu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forensic medicine and inaction of law which is adequate for the actual circumstance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 autopsy, general hospital, perception

## I. 서론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지니며, 생명의 존중은 생명의 마지막 모습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존중을 포함 한다<sup>1)</sup>.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죽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망원인을 밝혀내는가에 따라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죽음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장례절차와 행정상 사망등록의 절차를 위한 것에서부터 그 죽음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 죽음에 대하여 좀 더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형사상 절차에 필요하기도 하고, 사망에 관한 정확한 조사는 보험, 연금, 유언, 상속 등의 많은 민사상 절차에도 필요하며, 사망원인에 따른 사망통계와 원인분석을 하여 국민의 보건, 의료 정책수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행정정책수립에도 기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sup>2)</sup>. 이렇듯 현대에는 사후 법적 처리도 과거보다 엄격하고 정확해야하며, 각종 법적 권리에 대한 유족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3)</sup>.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어 좀 더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의 장기 조직을 육안 검사 및 현미경적 검사를 하여 질병의 유무를 알아내고, 외부 손상이 있을 경우 그 손상의 양상을 검사하여 사건, 사고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sup>4)</sup>. 이러한 부검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다방면으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부검의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5)</sup>.

본 연구조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직종 간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부검에 대한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대상 선정에 있어 전국 대학병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 개월간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01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약 91.2%이었다. 그 중에서 설문 문항의 절반 이상을 작성하지 않은 15부를 제외한 28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질문에 응답자가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시간을 주었으며, 무기명으로 하여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양윤영<sup>3)</sup>, 김정아<sup>5)</sup>, 이정식<sup>9)</sup>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에 부검에 대한 정의와 부검이 시행되는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질문의 항목은 일반적인 질문 10 문항과 부검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 20 문항으로 총 30 문항이다.

### Ⅲ. 결 과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영남대학교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 286 명으로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그림 1).

일반적인 특성의 빈도분석을 살펴보면 대상자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고, 연령분포는 20~29세가 86 명(30.1%), 30~39세가 114 명(39.9%), 40~49세가 75 명(26.2%), 50~59세가 11 명(3.8%)으로 30~39세가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16 명

(40.6%), 기혼이 166 명(58.0%), 기타가 4 명(1.4%)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49 명(17.1%), 천주교가 47 명(16.4%), 불교가 68 명(23.8%), 무교가 117 명(40.9%), 기타가 5 명(1.7%)으로 무교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107 명(37.4%), 대졸이 108 명(37.8%), 대학원 재학이상이 71 명(24.8%)이고, 경력은 1~5년이 93 명(32.5%), 6~10년이 60 명(21.0%), 11~15년이 48 명(16.8%), 16~20년이 51 명(17.8%), 20년 이상이 34 명(11.9%)으로 1~5년이 가장 많았다. 직업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8 명(6.3%), 만족은 153 명(53.5%), 보통은 105 명(36.7%), 불만족은 10 명(3.5%)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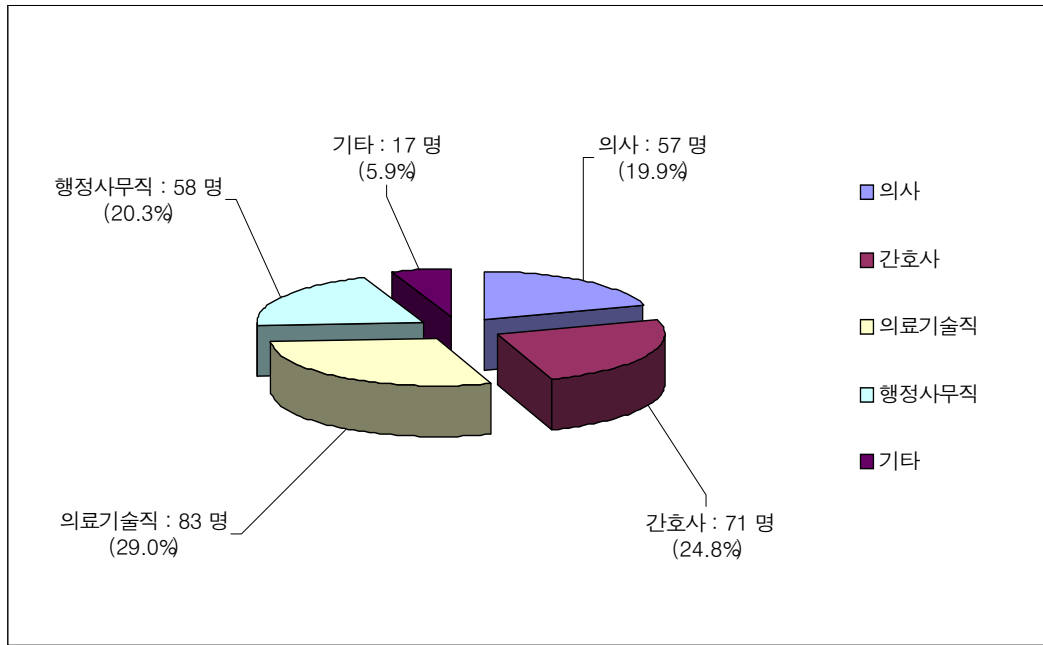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자들의 직종.

(단위 : 명(%))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특성	대상자 수 - 명(%)					
	전체(%)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행정사무직(%)	기타(%)
성별						
남자	121(42.3)	41(71.9)	3(4.2)	42(50.6)	32(55.2)	3(17.6)
여자	165(57.7)	16(28.1)	68(95.8)	41(49.4)	26(44.8)	14(82.4)
연령(세)						
20~29	86(30.1)	35(61.4)	21(29.6)	24(28.9)	5(8.6)	1(5.9)
30~39	114(39.9)	22(38.6)	30(42.3)	29(34.9)	24(41.4)	9(52.9)
40~49	75(26.2)		20(28.2)	25(30.1)	24(41.4)	6(35.3)
50~59	11(3.8)			5(6.0)	5(8.6)	1(5.9)
60 이상						
결혼						
미혼	116(40.6)	41(71.9)	28(39.4)	30(36.1)	14(24.1)	3(17.6)
기혼	166(58.0)	16(28.1)	41(57.7)	51(61.4)	44(75.9)	14(82.4)
기타	4(1.4)		2(2.8)	2(2.4)		
종교						
기독교	49(17.1)	11(19.3)	11(15.5)	16(19.3)	10(17.2)	1(5.9)
천주교	47(16.4)	13(22.8)	11(15.5)	11(13.3)	11(19.0)	1(5.9)
불교	68(23.8)	7(12.3)	20(28.2)	20(24.1)	14(24.1)	7(41.2)
무교	117(40.9)	26(45.6)	26(36.6)	35(42.2)	23(39.7)	7(41.2)
기타	5(1.7)		3(4.2)	1(1.2)		1(5.9)
학력						
전문대졸	107(37.4)		35(49.3)	36(43.4)	27(46.6)	9(52.9)
대학교졸	108(37.8)	38(66.7)	22(31.0)	18(21.7)	24(41.4)	6(35.3)
대학원 재학이상	71(24.8)	19(33.3)	14(19.7)	29(34.9)	7(12.1)	2(11.8)
경력(년)						
1~5	93(32.5)	52(91.2)	9(12.7)	26(31.3)	6(10.3)	
6~10	60(21.0)	5(8.8)	24(33.8)	16(19.3)	10(17.2)	5(29.4)
11~15	48(16.8)		13(18.3)	10(12.0)	21(36.2)	4(23.5)
16~20	51(17.8)		16(22.5)	19(22.9)	14(24.1)	2(11.8)
20 이상	34(11.9)		9(12.7)	12(14.5)	7(12.1)	6(35.3)
만족도						
매우 만족	18(6.3)	8(14.0)	2(2.8)	4(4.8)	3(5.2)	1(5.9)
만족	153(53.5)	33(57.9)	33(46.5)	48(57.8)	32(55.2)	7(41.2)
보통	105(36.7)	15(26.3)	33(46.5)	25(30.1)	23(39.7)	9(52.9)
불만족	10(3.5)	1(1.8)	3(4.2)	6(7.2)		
매우 불만족						
계	286(100.0)	57(19.9)	71(24.8)	83(29.0)	58(20.3)	17(5.9)

업무 중 애로사항을 묻는 복수응답에 전문 의학 관련 지식의 부족이 17 명(4.8%), 환자 및 보호자의 비협조가 65 명(18.5%), 응급처치 지식의 부족이 17 명(4.8%), 여유시간의 부족이 113 명(32.2%), 다른 부서와의 상호협조의 부족이 89 명(25.4%), 기타가 50 명(14.2%)이었다. 직종 간에 특성상 의사는 여유시간의 부족이 월등히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도 여유시간의 부족이 높았지만,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비협조가 의료기술직과 행정사무직은 다른 부서와의 상호협조 부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직종에서는 다른 부서와의 상호협조 부족과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2).

사후 어떤 종류의 장례를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매장 36 명(12.6%), 화장이 154 명(53.8%),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가 96 명(33.6%)이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1994년 화장에 대한 선호도는 32.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1년 62.2%로 2배가 되었고, 2005년에는 77.8%까지 늘었다고 한다(6). 본 설문에서도 화장과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를 합하면 87.4%로 한국갤럽의 2005년 수치보다 10%정도 높았으며, 화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다음으로 부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빈도분석

을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게 된 경로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 의사는 의료인과 학회, 법의학 강의가 똑같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TV-의학드라마, 라디오가 16.4%, 신문, 관련서적, 의학전문 잡지가 12.7%, 친구, 직장동료가 4.5%, 인터넷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TV-의학드라마, 라디오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신문, 관련서적, 의학전문 잡지가 19.7%, 의료인이 15.3%, 친구, 직장동료가 9.5%, 인터넷이 7.3%, 학회 법의학 강의가 3.6%, 기타가 1.5% 순이고, 의료기술직도 TV-의학드라마, 라디오가 39.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신문, 관련서적, 의학전문 잡지가 19.4%, 의료인이 16.3%, 친구, 직장동료, 인터넷이 7.5%, 학회, 법의학 강의가 6.9%, 기타가 3.1% 순으로 나타났고, 행정사무직 역시 TV-의학드라마, 라디오가 47.0%로 가장 높았으며, 신문, 관련서적, 의학전문 잡지가 17.0%, 의료인이 13.0%, 친구, 직장동료가 11%, 기타가 6.0%, 인터넷이 4.0%, 학회, 법의학 강의가 2.0% 순이었다. 기타 직종에서도 TV-의학드라마, 라디오가 48.5%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인이 18.2%, 신문, 관련서적, 의학전문 잡지, 친구, 직장동료가 각각 12.1%, 학회, 법의학 강의가 6.1%, 인터넷이 3.0%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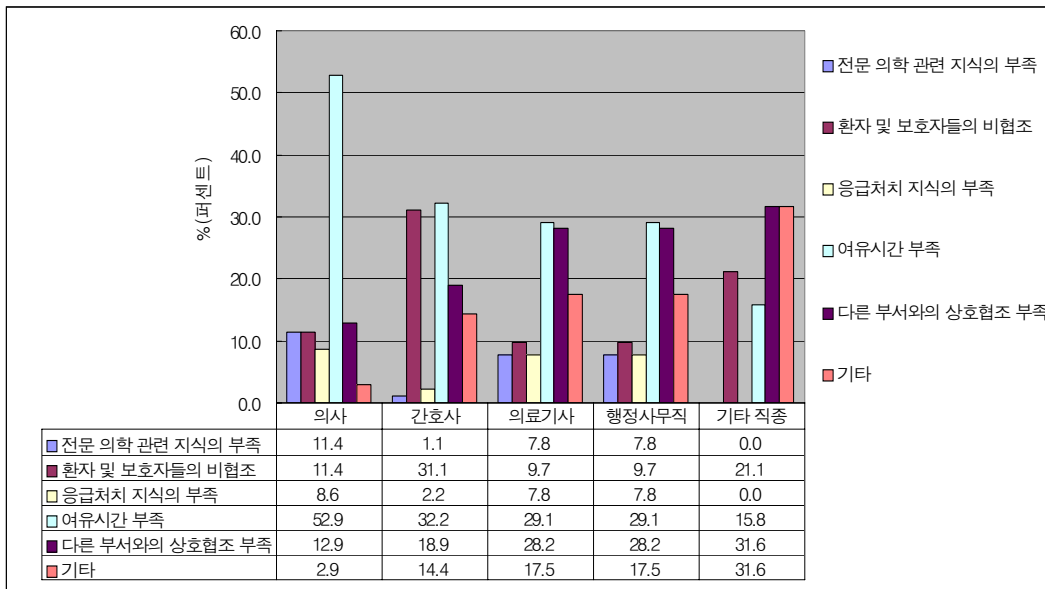


그림 2. 근무 중 애로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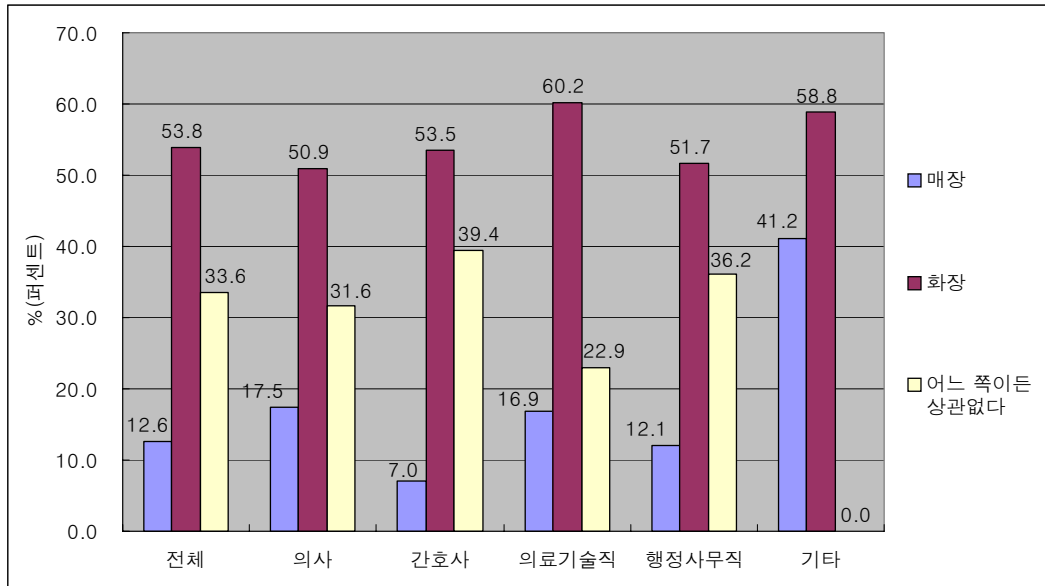


그림 3. 선호하는 장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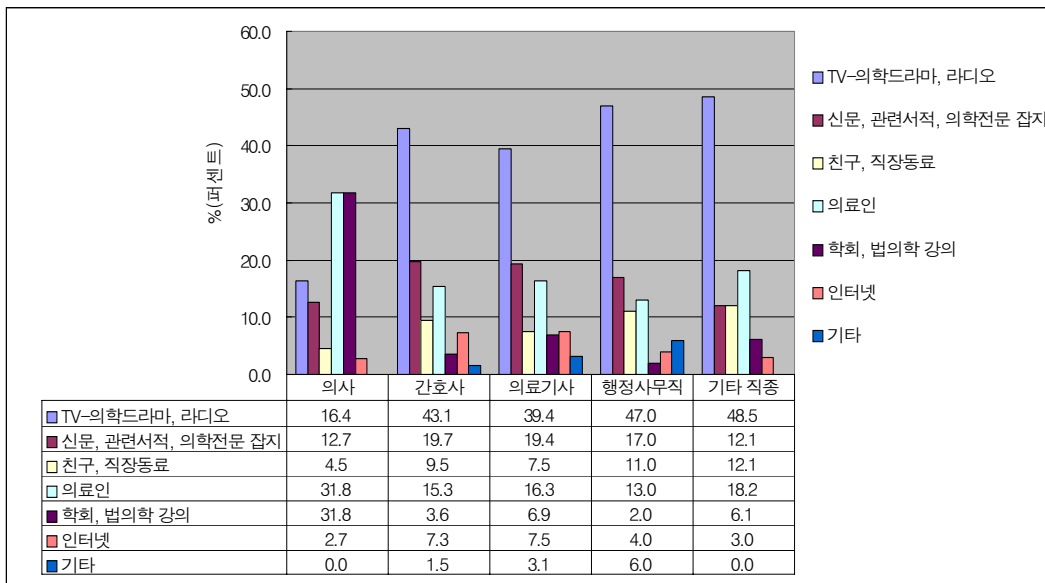


그림 4. 부검에 대한 정보원.

(단위 : %)

부검 장면을 견학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없다고 63.2%로 가장 높았으며, 1회가 22.8%, 2회 이상이 14.0%이고, 간호사도 없다고 88.7%로 가장 높았으며, 1회가 7.0%, 2회 이상이 4.3%이었다. 의료기술직도 없다고 77.1%로 가장 높았으며, 1회가 10.8%, 2회 이상이 12.0%이고, 행정사무직은 없다고 100.0%로 나왔고, 기타 직종은 없다고 88.2%, 1회가 11.8%이었다(그림 5).

부검(법의학)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

는 질문에 의사는 없다고 5.3%, 1회가 33.3%, 2회 이상이 61.4%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는 없다고 93.0%로 가장 높았으며, 1회가 7.0%, 2회 이상이 4.2%이었다. 의료기술직도 없다고 72.3%로 가장 높았으며, 1회가 12.0%, 2회 이상이 15.7%이고, 행정사무직도 없다고 98.3%로 가장 높았으며, 2회 이상이 1.7%이고, 기타 직종은 없다고 94.1%로 가장 높았으며, 2회 이상이 5.9%이었다(그림 6).

부검(법의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의사는 필요하다는 94.7%, 필요없다는 무응답이며, 잘 모르겠다가 5.3%이었고, 간호사는 필요하다는 62.0%, 필요없다가 9.9%, 잘 모르겠다가 28.2%이었다. 의료기술직은 필요하다는 81.9%, 필요없다가 3.6%, 잘 모르겠다가 14.5%이었던

고, 행정사무직은 필요하다는 67.2%, 필요없다가 17.2%, 잘 모르겠다가 15.5%이었다. 기타 직종은 필요하다는 41.2%, 필요없다가 5.9%, 잘 모르겠다가 41.2%이었다. 의사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타 직종에 비해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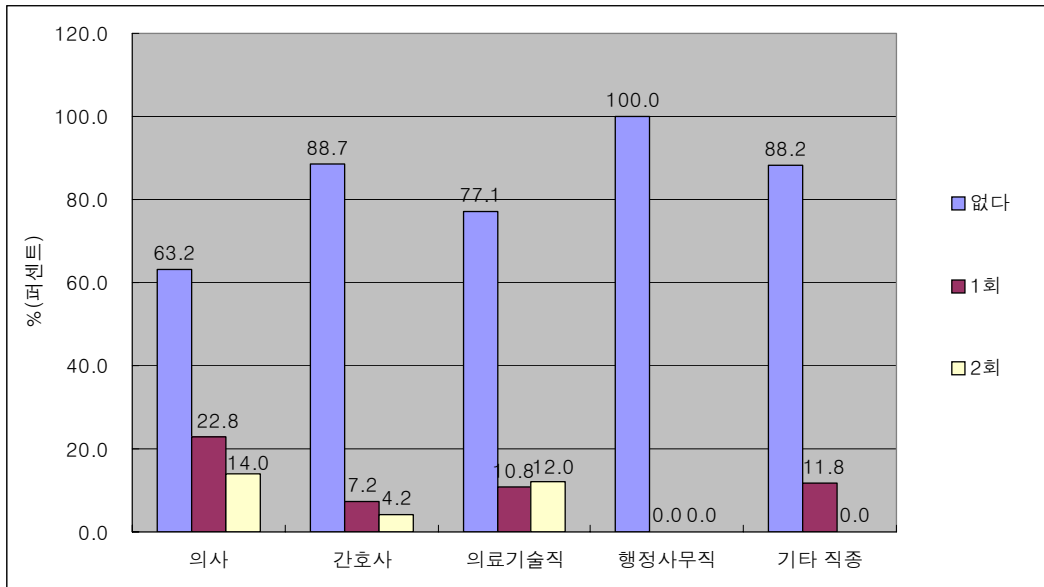


그림 5. 부검 장면의 견학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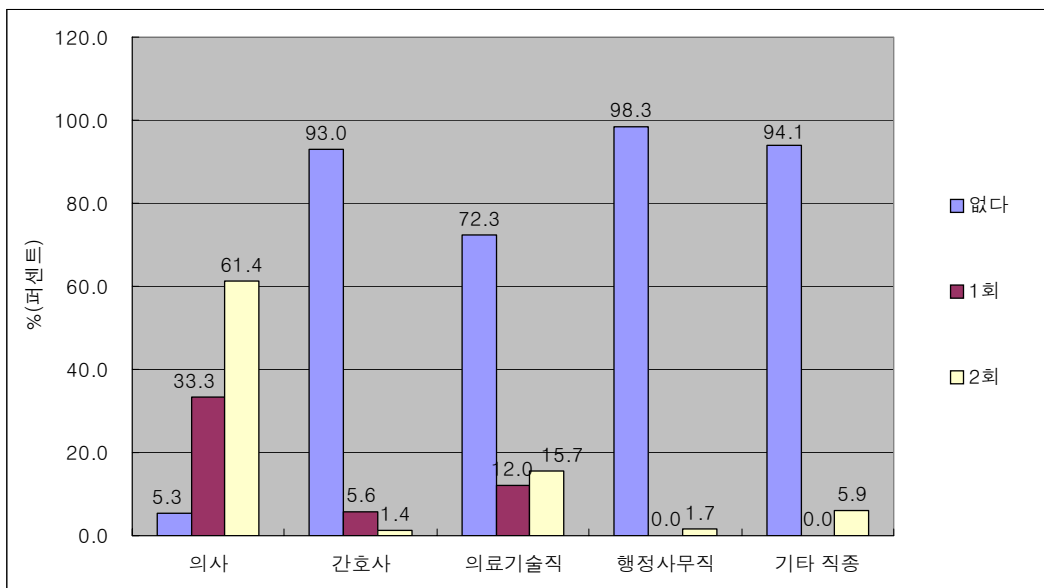


그림 6. 부검에 대한 강의나 교육 유무.

(단위 : %)

부검(법의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1~2시간이 3.5%, 3~5시간이 19.3%, 6~8시간이 45.6%, 9시간 이상이 31.6%이었고, 간호사는 1~2시간이 35.2%, 3~5시간이 23.9%, 6~8시간이 18.3%, 9시간 이상이 11.3%, 무응답이 11.3%이었다. 의료기술직은 1~2시간이 38.6%, 3~5시간이 26.5%, 6~8시간이 18.1%, 9시간 이상이 12.0%, 무응답이

4.8%이었고, 행정사무직은 1~2시간이 43.1%, 3~5시간이 19.0%, 6~8시간이 13.8%, 9시간 이상이 6.9%, 무응답이 17.2%이었고, 기타 직종은 1~2시간은 29.4%, 3~5시간은 23.5%, 6~8시간은 없었으며, 9시간 이상은 17.5%, 무응답이 29.4%이었다. 의사는 6~8시간과 9시간이상으로 많은 교육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른 직종에서는 1~2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을 하지 않은 대상자까지 있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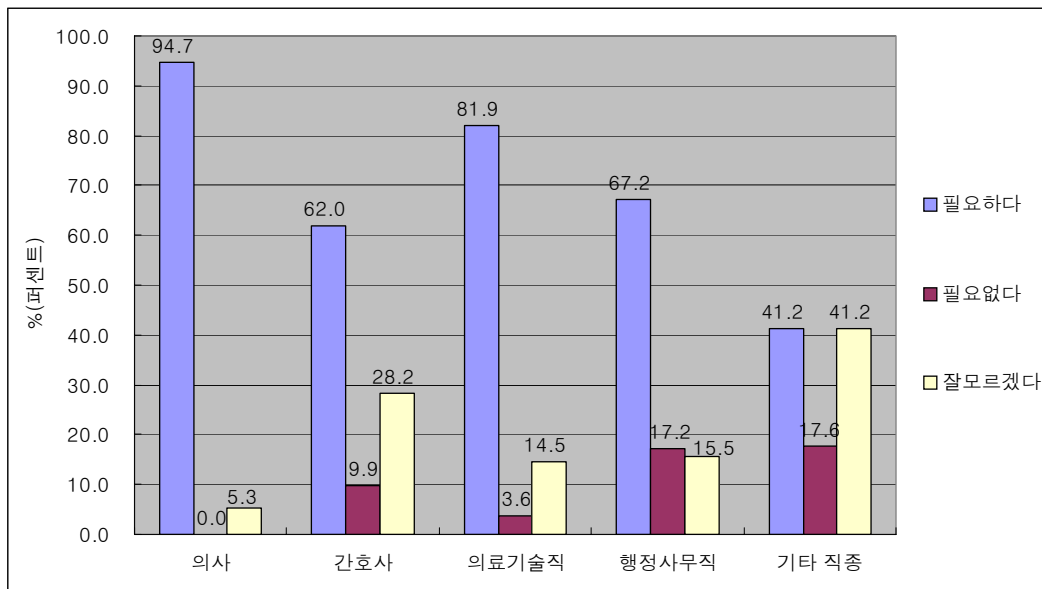


그림 7. 부검(법의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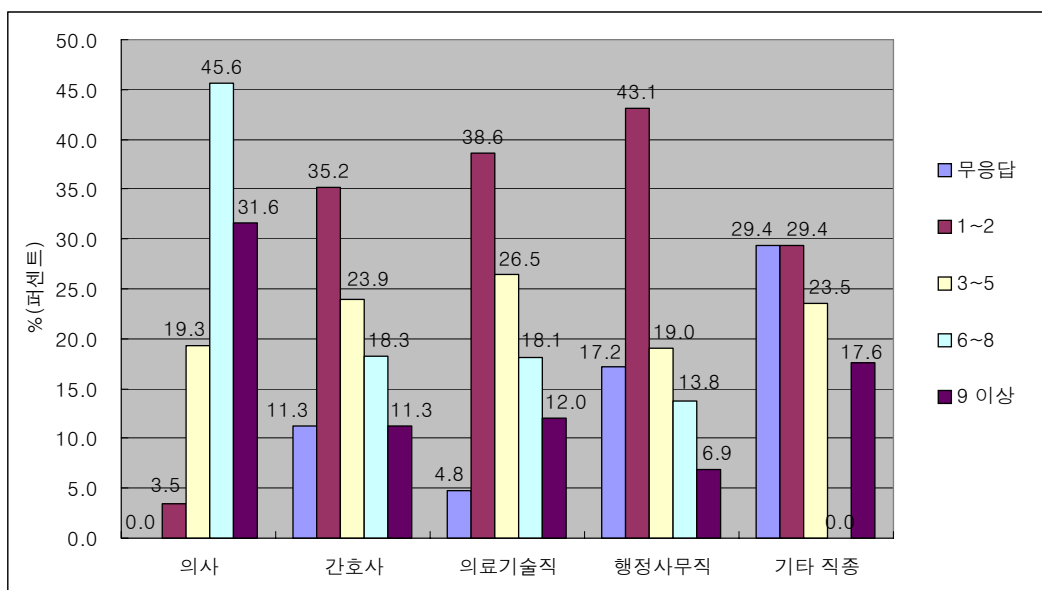


그림 8. 부검(법의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간은?

(단위 : %)



본인이 병사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그렇다가 35.1%, 그렇지 않다가 54.4%, 잘 모르겠다가 10.5%이었고, 간호사는 그렇다가 4.2%, 그렇지 않다가 80.3%, 잘 모르겠다가 15.5%이었다. 의료기술

직은 그렇다가 14.5%, 그렇지 않다가 63.9%, 잘 모르겠다가 21.7%이었고, 행정사무직은 그렇다가 19.0%, 그렇지 않다가 56.9%, 잘 모르겠다가 24.1%이었고, 기타 직종은 그렇지가 0.0%, 그렇지 않다가 76.5%, 잘 모르겠다가 23.5%이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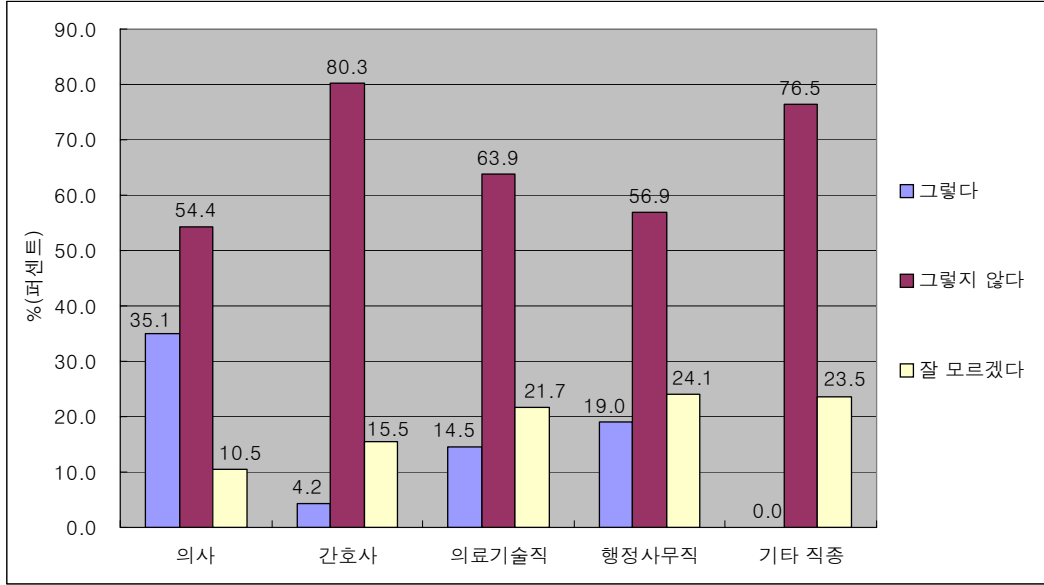


그림 9. 본인이 병사한 경우 부검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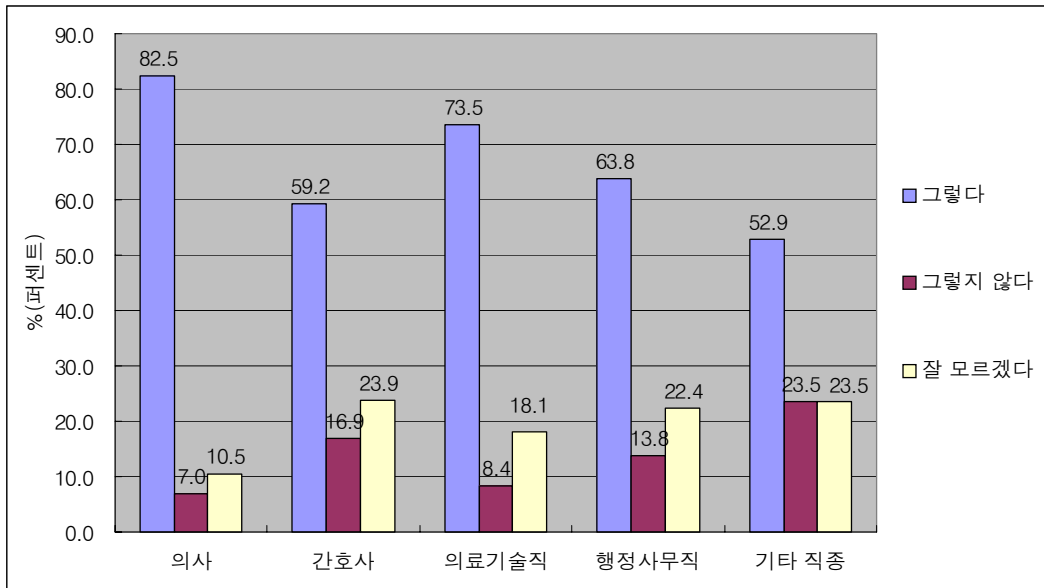


그림 10. 본인이 병사한 경우 부검 유무.

(단위 : %)

본인이 번사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그렇다가 82.5%, 그렇지 않다가 7.0%, 잘 모르겠다가 10.5%이었고, 간호사는 그렇다가 59.2%, 그렇지 않다가 16.9%, 잘 모르겠다가 23.9%이었다. 의료기술직은 그렇다가 73.5%, 그렇지 않다가 8.4%, 잘 모르겠다가 18.1%이었고, 행정사무직은 그렇다가 63.8%, 그렇지 않다가 13.8%, 잘 모르겠다가 22.4%이었고, 기타 직종은 그렇다가 52.9%, 그렇지 않다가와 잘 모르겠다가 똑같이 23.5%이었다(그림 10).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 의뢰 안한다가 21.1%, 잘 모르겠다가 19.3%이었고, 간호사는 의뢰한다가 22.5%, 의뢰 안한다가 38.0%, 잘 모르겠다가 39.4%이었다. 의료기술직은 의뢰한다가 39.8%, 의뢰 안한다가 28.9%, 잘 모르겠다가 31.3%이었고, 행정사무직은 의뢰한다가 41.4%, 의뢰 안한다가 27.6%, 잘 모르겠다가 31.0%이었고, 기타 직종은 의뢰한다가 35.3%, 의뢰 안한다가 29.4%, 잘 모르겠다가 35.3%이었다(그림 11).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그렇다가 66.7%, 그렇지 않다가 17.5%, 잘 모르겠다가 15.8%이었고, 간호사는 그렇다가 33.8%, 그렇지 않다가 26.8%, 잘 모르겠다가 39.4%이었다. 의료기술직은 그렇다가 39.8%, 그렇지 않다가 27.7%, 잘 모르겠다가 32.5%이었고, 행정사무직은 그렇다가 43.1% 그렇지 않다가 31.0%, 잘 모르겠다가 25.9%이었고, 기타 직종은 그렇다가 17.6%, 그렇지 않다가 23.5%, 잘 모르겠다가 58.8%이었다(그림 12).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그렇다가 50.9%, 그렇지 않다가 36.8%, 잘 모르겠다가 12.3%이었고, 간호사는 그렇다가 8.5%, 그렇지 않다가 67.6%, 잘 모르겠다가 23.9%이었다. 의료기술직은 그렇다가 19.3%, 그렇지 않다가 54.2%, 잘 모르겠다가 26.5%이었고, 행정사무직은 그렇다가 24.1%, 그렇지 않다가 50.0%, 잘 모르겠다가 25.9%이었고, 기타 직종은 그렇다가 17.6%, 그렇지 않다가와 잘 모르겠다가 똑같이 41.2%이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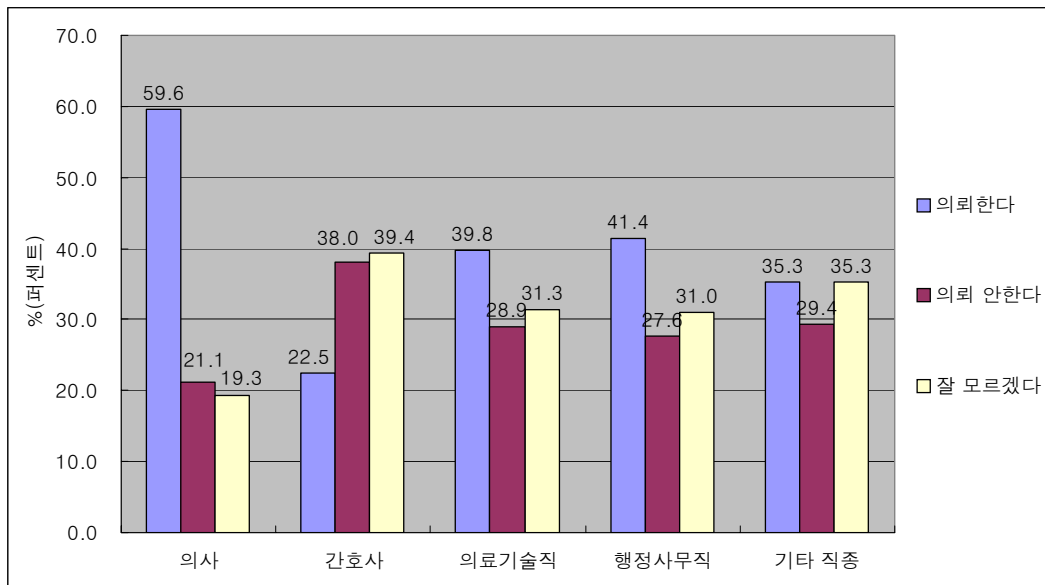


그림 11. 본인이나 가족이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 의뢰 여부.

(단위 : %)

병원내 환자가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회복도중 사망했다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그렇다가 80.7%, 그렇지 않다가 10.5%, 잘 모르겠다가 8.8%이었고, 간호사는 그렇다가 47.9%, 그렇지 않다가 23.9%, 잘 모르겠다가 28.2%이었다. 의료기술직은 그렇다가

71.1%, 그렇지 않다가 10.8%, 잘 모르겠다가 18.1%이었고, 행정사무직은 그렇다가 65.5%, 그렇지 않다가 15.5%, 잘 모르겠다가 19.0%이었고, 기타 직종은 그렇다가 52.9%, 그렇지 않다가 11.8%, 잘 모르겠다가 35.3%이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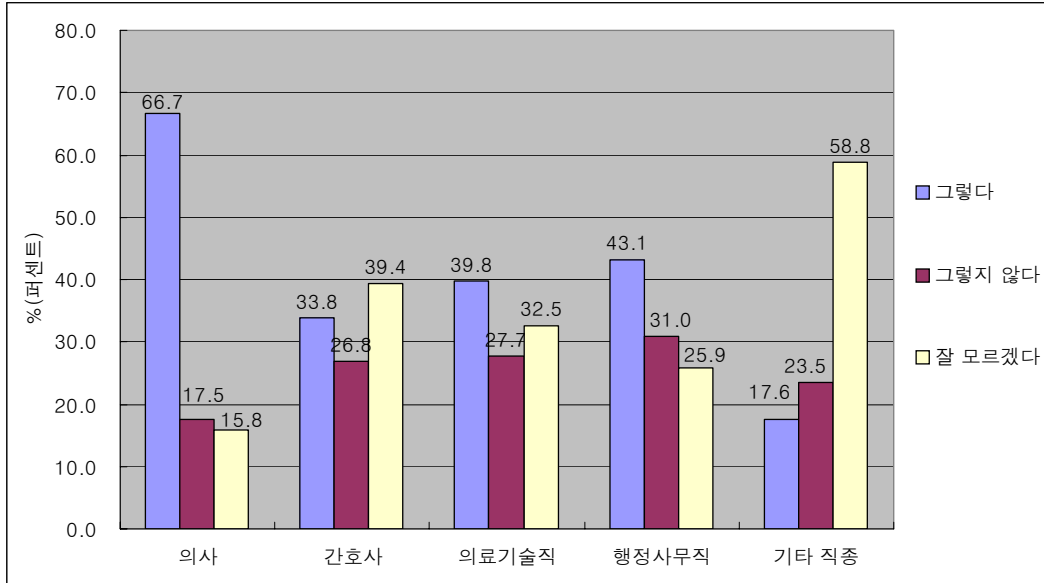


그림 12. 직장 동료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부검 사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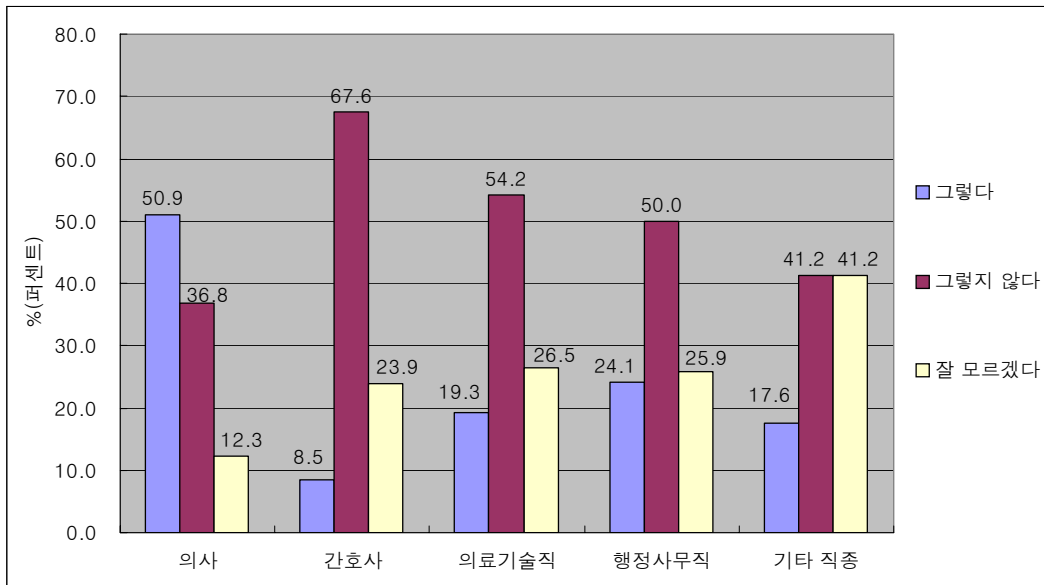


그림 13.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유무. (단위 : %)

범죄에 의한 타살시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그렇다가 93.0%, 그렇지 않다가 5.3%, 잘 모르겠다가 1.8%이었고, 간호사는 그렇다가 88.7%, 그렇지 않다가 4.2%, 잘 모르겠다가 7.0%이었다. 의료기술직

은 그렇다가 91.6%, 그렇지 않다가 2.4%, 잘 모르겠다가 6.0%이었고, 행정사무직은 그렇다가 91.4%, 그렇지 않다가 1.7%이었고, 기타 직종은 그렇다가 82.4%, 잘 모르겠다가 17.6%이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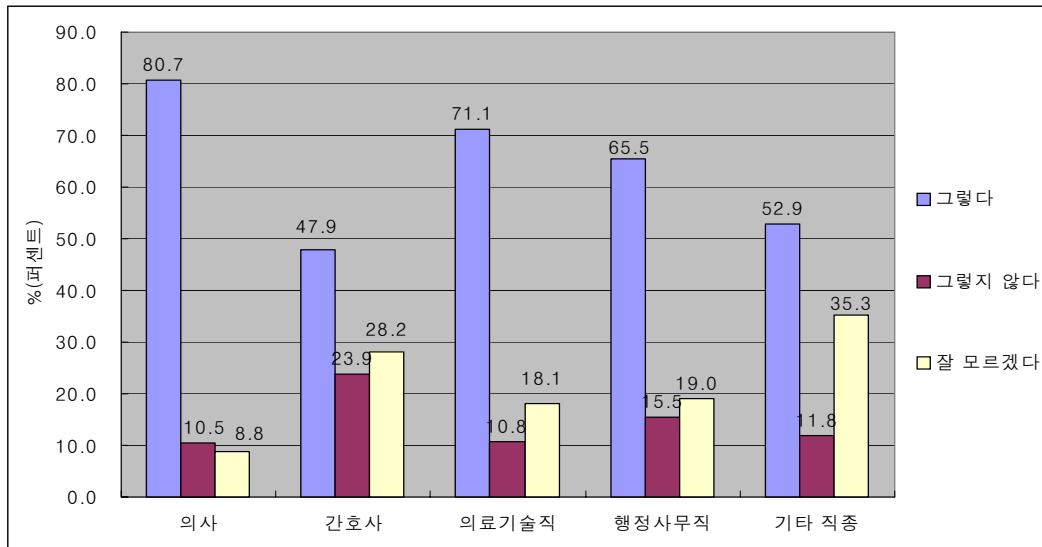


그림 14. 병원내 환자가 수술중이나 회복도중 사망 시 부검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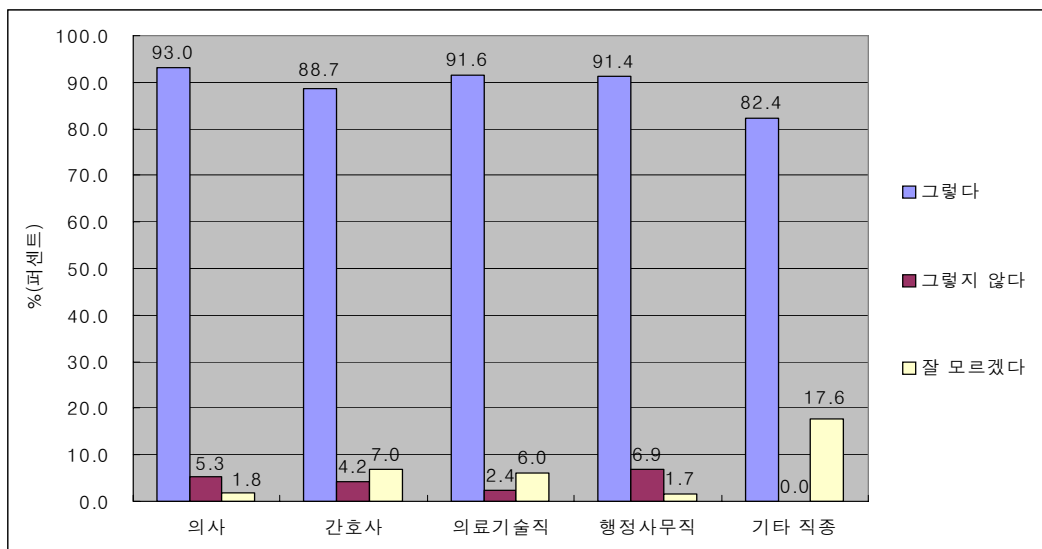


그림 15. 범죄에 의한 타살시 부검 유무. (단위 : %)

보험절차나 산업재해에 이득이 된다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그렇다가 70.2%, 그렇지 않다가 19.3%, 잘 모르겠다가 10.5%이었고, 간호사는 그렇다가 40.8%, 그렇지 않다가 21.1%, 잘 모르겠다가 38.0%이었다. 의료기술직은 그렇다가 66.3%, 그렇지 않다가 15.7%, 잘 모르겠다가 18.1%이었고, 행정사무직은 그렇다가 58.6%, 그렇지 않다가 22.4%, 잘 모르겠다가 19.0%이었고, 기타 직종은 그렇다가 41.2%, 그렇지 않다가 5.9%, 잘 모르겠다가 52.9%이었다(그림 16).

잘 모르겠다가 52.9%이었다(그림 16).

「어떠한 상황이라도 부검은 무조건 싫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그렇다가 1.8%, 그렇지 않다가 84.2%, 잘 모르겠다가 14.0%이었고, 간호사는 그렇다가 11.3%, 그렇지 않다가 74.6%, 잘 모르겠다가 14.1%이었다. 의료기술직은 그렇지가 않다가 92.8%, 잘 모르겠다가 7.2%이었고, 기타 직종은 그렇다가 12.1%, 그렇지 않다가 72.4%, 잘 모르겠다가 15.5%이었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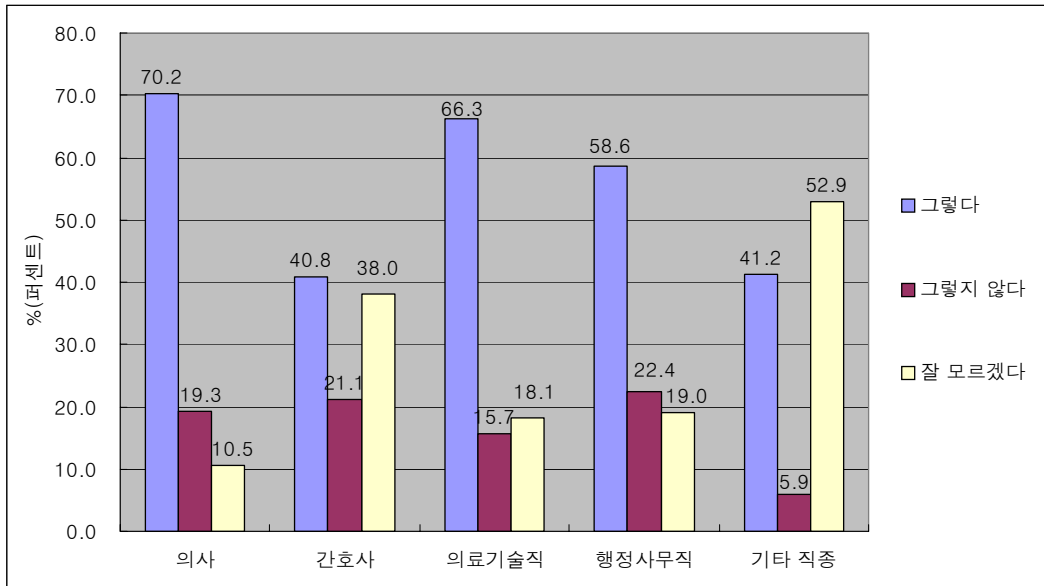


그림 16. 보험절차나 산업재해에 이득이 된다면 부검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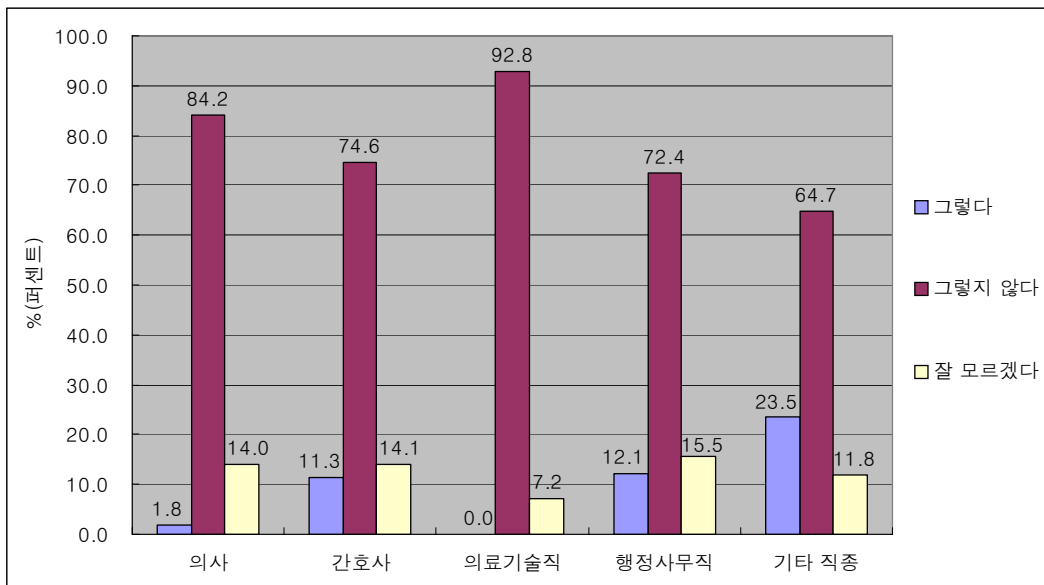


그림 17. '어떠한 상황이라도 부검은 무조건 싫다'

(단위 : %)

부검이 의문사를 밝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가 47.4%,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가 52.6%이었고, 간호사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가 35.2%,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가 63.4%,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1.4%이었다. 의료기술직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가 44.6%,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가 55.4%이었고, 행정사무직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가 46.6%,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가 51.7%,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1.7%이었고, 기타 직종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가 23.5%,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가 76.5%이었다. 모든 직종에서 부검이 의문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 종합병원이 12.3%,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2.3%, 기타가 1.8%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새로이 독립된 기관이 시행(입법·사법·행정부와 완전히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있었다. 간호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35.2%, 종합병원이 2.8%,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62.0%이었다. 의료기

술직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37.3%, 종합병원이 2.4%,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59.0%, 기타가 1.2%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면 모두라고 답한 대상자가 있었다. 행정사무직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41.4%, 종합병원이 8.6%,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46.6%, 경찰청이 3.4%이었고, 기타 직종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4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58.8%이었다.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월등히 높았는데,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19).

부검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98.2%, 임상교수가 1.8%이었고, 간호사는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94.4%, 주치의가 2.8%, 임상교수와 기초의학교수가 똑같이 1.4%이었다. 의료기술직은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96.4%, 주치의가 1.2%, 기초의학교수가 2.4%이었고, 행정사무직은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89.7%, 주치의가 3.4%, 임상교수가 1.7%, 기초의학교수가 5.2%이었고, 기타 직종은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88.2%, 임상교수가 11.8%이었다.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부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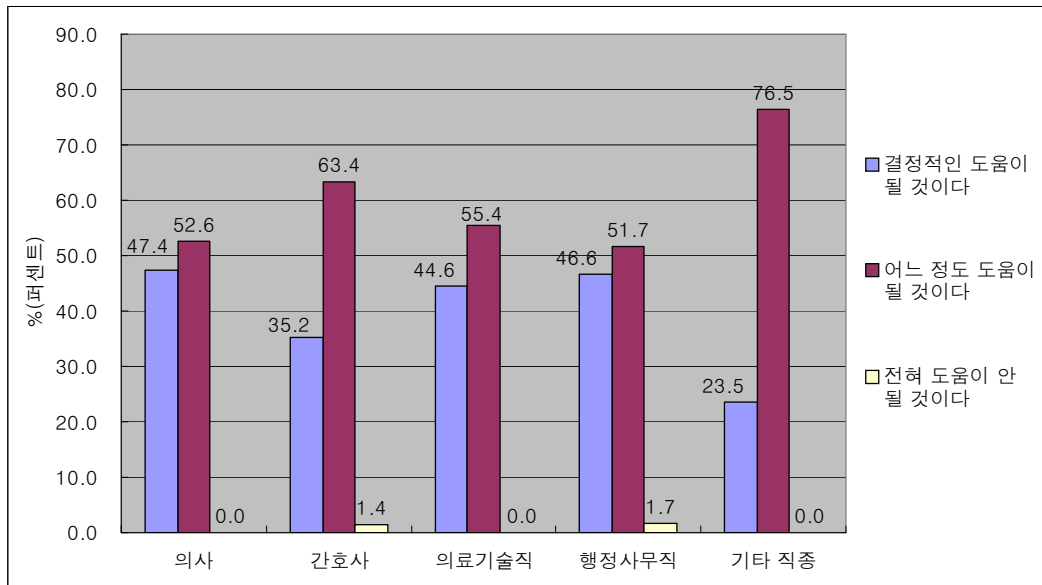


그림 18. 부검이 의문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가?

(단위 : %)

어떤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다중응답으로 답했으며, 병사가 5.6%, 변사가 77.5%, 자살이 4.2%, 사고사 - 대량재해, 철도, 비행기, 교통사고 등이 12.7%이었고, 간호사는 병사가 5.6%, 변사가 77.5%, 자살이 4.2%, 사고사 - 대량재해, 철도, 비행기, 교통사고

등이 12.7%이었다. 의료기술직은 병사가 1.2%, 변사가 97.6%, 자살이 1.2%이었고, 행정사무직은 병사가 3.1%, 변사가 83.1%, 자살이 6.2%, 사고사 - 대량재해, 철도, 비행기, 교통사고 등이 7.7%이었고, 기타 직종은 병사 5.9%, 변사 94.1%이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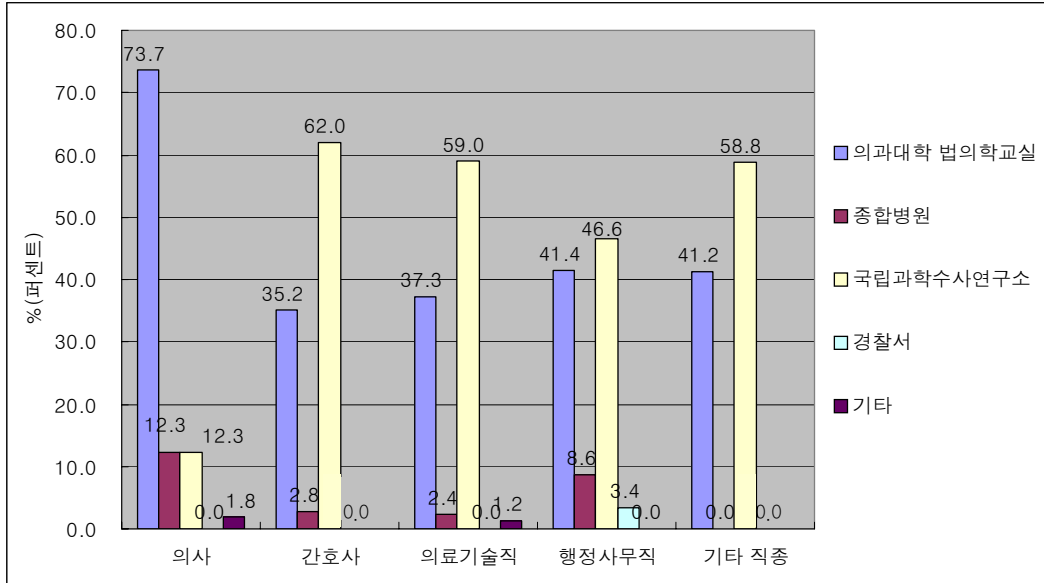


그림 19.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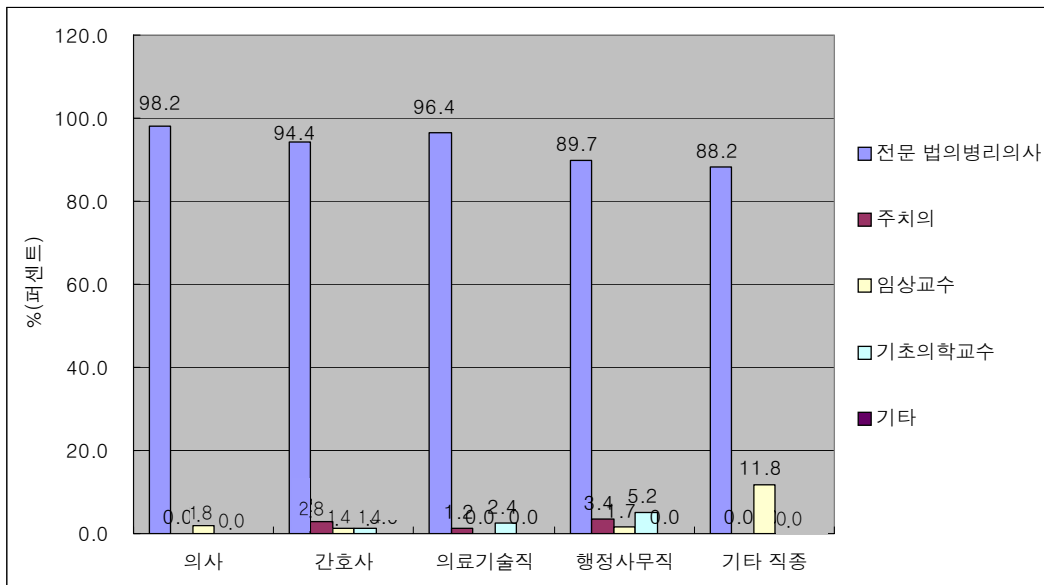


그림 20. 부검의 주체는? (단위 : %)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있다가 73.7%, 없다가 15.8%, 잘 모르겠다가 10.5%였고, 간호사는 있다가 23.9%, 없다가 46.5%, 잘 모르겠다가 29.6%이었다. 의료기술직은 있다가 47.0%, 없다가 27.7%, 잘 모르겠다가 25.3%이었고, 행정사무직은 있다가 34.5%, 없다가 37.9%, 잘 모르겠다가 27.6%이었고, 기타 직종은 있다가 23.5%, 없다가 29.4%, 잘 모르겠다가 47.1%이었다. 의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있다가 73.7%, 없다가 15.8%, 잘 모르겠다가 10.5%였고, 간호사는 있다가 23.9%, 없다가 46.5%, 잘 모르겠다가 29.6%이었다. 의료기술직은 있다가 47.0%, 없다가 27.7%, 잘 모르겠다가 25.3%이었고, 행정사무직은 있다가 34.5%, 없다가 37.9%, 잘 모르겠다가 27.6%이었고, 기타 직종은 있다가 23.5%, 없다가 29.4%, 잘 모르겠다가 47.1%이었다. 의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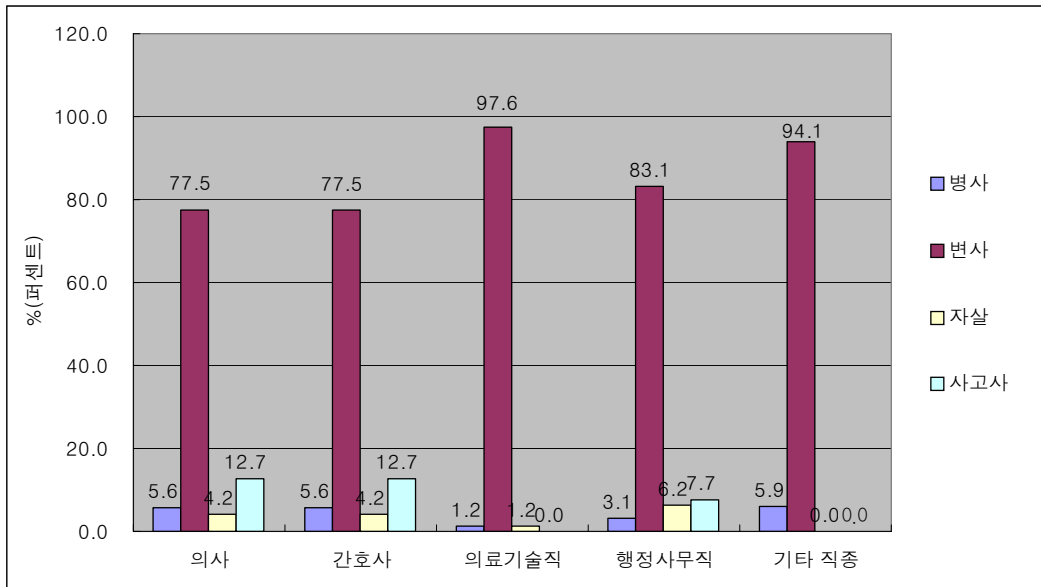


그림 21. 어떤 때 부검을 해야 하는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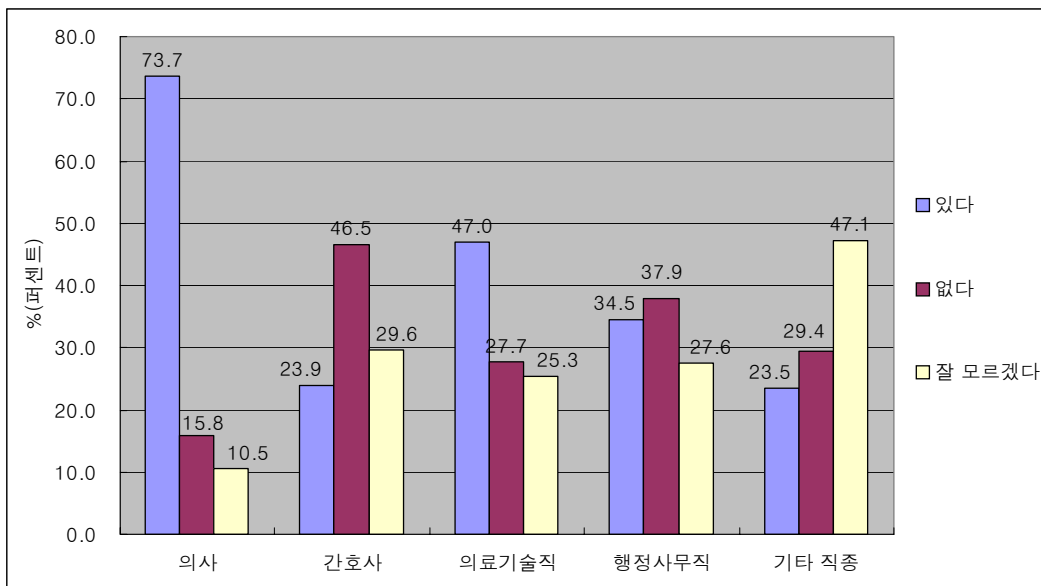


그림 22.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가?

(단위 : %)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있다가 22.8%, 없다가 42.1%, 잘 모르겠다가 35.1%이었고, 간호사는 있다가 11.3%, 없다가 52.1%, 잘 모르겠다가 36.6%이었다. 의료기술직은 있다가 24.1%, 없다가 44.6%, 잘 모르겠다가 31.3%

이었고, 행정사무직은 있다가 22.4%, 없다가 46.6%, 잘 모르겠다가 31.0%이었고, 기타 직종은 있다가 23.5%, 없다가 35.3%, 잘 모르겠다가 41.2%이었다. 모든 직종의 대상자들이 사후 본인의 사체를 기증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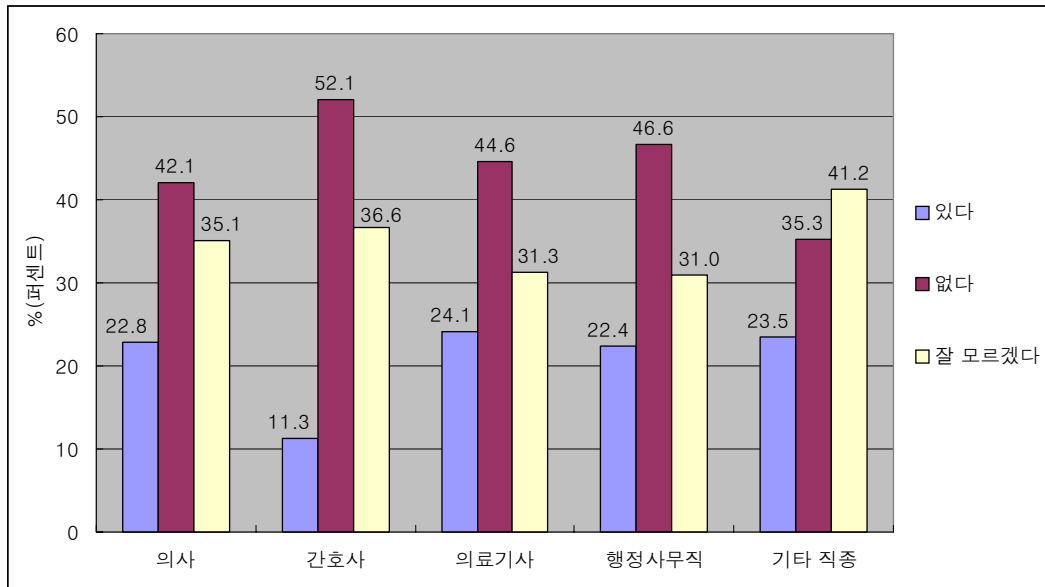


그림 23. 사후 사체 기증 유무. (단위 : %)

### IV. 고 찰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및 개념이 과거에는 국민의 출생, 건강유지, 의식주 및 노인문제 등을 국가적 시책으로 원만히 해결하는데 그쳤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사망문제까지도 포함하게 되었으며, 국민이 사망한 경우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은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sup>4)</sup>.

우리나라의 법의학은 세종 원년인 1419년 형조의 검시문안에 중국 원나라시대의 왕여(王與)가 지은 무원록이 처음 등장하였고, 1430년 율학(律學)의 취재과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1435년에는 인명의 살상협증(殺傷驗證)을 시행할 때 무원록의 검시규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1438년에 세종은 무원록이 난해하고 우리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도 많음을 보고 최치운, 이세형, 변효문, 김항 등에게 주해를 더하고 음훈(音訓)을 붙여 신주무원록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1440년 책이 완성되자 이를 각도에 반포하였으며, 1442년에는 모든 검시를 행할 때는 이 책의 규정에 의

거하도록 하였다. 책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상권은 시장식(屍帳式), 시장례(屍帳例) 등의 17항목으로 시체검안에 관한 규정과 원나라의 검험판례문이 실려 있다. 하권은 검복총설(檢覆總說), 험법(驗法)을 비롯한 43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상변별(屍傷辨別)에 관한 시인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한다<sup>7)</sup>. 이후 일제강점기에 모든 제도를 일본식으로 하였다. 일본은 독일을 본받아 대륙법계열의 법률체계를 만들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였으며, 교육도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교과과정도 그러하였다<sup>8)</sup>. 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법의학이 장기간 활성화 되지 않다가 1976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이 처음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교 수는 175개 대학이며,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은 국립대학 10개와 사립대학 31개 대학이다. 그 중에서 독립된 법의학교실과 전문 법의학자를 보유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법의학과 이렇게 10개 대학뿐인 실정이다<sup>9)</sup>.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시체제는 크게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영미법계의 제도와 대륙법계의 제도이다.

영미법계의 제도에는 검시관제도(Coroner System)와 법의관제도(Medical Examiner System)가 있다. 검시관제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시작된 것으로 검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을 포함한 모든 외인사와 사인이 불명확한 죽음에 관련된 주변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는 일을 업무로 담당하며, 독립적인 사법 관리로서 변사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주로 법률가가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의학적 검사인 검안과 부검업무는 의과대학의 병리학교수 또는 법의학교수가 담당한다. 검시관제도는 영국, 미국의 일부 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sup>1)</sup>. 법의관제도는 영국의 검시관제도가 미국으로 건너가 변형된 것으로 뉴욕시에서 가장 먼저 정식으로 채택한 제도이다. 검시관제도의 검시관은 법률가지만, 법의관(Medical Examiner)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의사 또는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변사체에 대한 검안과 부검 여부의 결정, 부검 시행, 사망원인 결정, 사망의 종류 결정 등을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법의관은 목격자에 대한 심문이나 주변조사에 관한 법률적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을 포함한 조사 및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법의관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일정한 임기를 가지고 선출되며, 경찰에 의해 통보된 변사사건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부검 등 의학적 검사를 시행한다<sup>1)</sup>.

대륙법계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조사를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변사체에 대한 검시의 책임을 가지고,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검안과 부검은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있는 의과대학에 의뢰하는 형식으로써<sup>10)</sup> 수사와 재판,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행해지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코틀랜드, 일본, 폴란드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검시주체가 수사기관이므로 살인, 사고사 또는 병사인지 불명확한 죽음에 대한 조사에 있어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하는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잘못 판단되어 명확한 사인규명 절차 없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여 범죄와 관련된 경우뿐 아니라 각종 사고사의 원인규명과 명백한 병사가 아닌 모든 죽음의 경우를 변사체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검시를 시행하도록 법률로서 규

정하고 있다<sup>11)</sup>.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대륙법계에 속하며, 사법검시우선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1항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을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죽음에 대한 조사의 책임을 검사가 맡고 있다<sup>11)</sup>. 검사가 직접 검시하거나 부검 시행을 명령하면 영장을 받아 부검을 시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의사의 자격은 없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서울 이외에 부산에 남부분소, 전북 장성에 서부분소, 대전에 중부분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 서울의대 법의학교실과 고려의대 법의학교실, 경북의대 법의학교실, 전남의대 법의학교실, 제주대의대 법의학교실에서도 법의부검을 수행한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경찰이 의뢰하면 지역의 경찰공이나 개원의사가 경찰 업무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부검을 맡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일찍부터 의사들이 법의감정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산경찰청과 협의하여 부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0)</sup>.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사법검시 우선제도이므로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 이외의 죽음에 대한 부검이 적어서 사고사나 자살 또는 병사일지라도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죽음을 정확히 평가할 수가 없다<sup>10)</sup>.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24만~25만 명이 숨지고, 이중 15%인 3만 7천여 명은 의문사로 세상을 떠난다.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변사의 경우 전문가의 검시를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하는데 실제 부검을 하는 경우는 8천명도 안 된다고 한다. 약 3만 명가량은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간다는 것이다<sup>12)</sup>. 그리고 부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집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변사체가 발견되고 부검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2 일이 경과한다. 주검의 초기 변화 단계에서 관찰되는 여러 소견이 사망시각 추정 등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놓치게 된다. 또한 검시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인 검시제도와 전문 법의병리의사 양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처럼 검사가 전문의사의 특수한 업무로 인정된다면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육은 거의 필요 없을 것이다. 검시가 일반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면 일본처럼 의과대학 교육에 법의학이 필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의학교육에서 법의학은 소홀하고 법의부검에 대한 제도도 제대로 없다. 적어도 죽음을 검사하는 일에

검안과 부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일반 의사가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컨대 의과대학에서 검시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정한 훈련을 받은 의사로 하여금 검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10)</sup>.

영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모여 검시관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정부에서 즉각 3년 동안 새로운 30명의 검시관을 양성하자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여기에 책정한 예산이 100억 달러였다. 인도에서는 이미 43년 전인 1964년 법의학 교수들이 모여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답답한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수렴하여 검시관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고, 현재 인도는 검시제도에 있어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검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검시제도에 대한 교육 및 예산편성에 인색하지 않으며, 이미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시절부터 지문인식, 범죄 상황 등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sup>12)</sup>. 또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행정당국에서 해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시신기증운동이 매우 활발하여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앞의 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1994년 화장에 대한 선호도는 32.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1년 62.2%로 2배가 되었고, 2005년에는 77.8%까지 늘었다고 하며, 본 연구에서도 화장과 화장이나 매장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가 87.4%로 높게 나왔다. 부검에 대한 거부감도 화장에서와 같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들어, 외국의 법의학드라마 CSI나 우리나라의 여러 의학드라마들의 인기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검(법의학)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을 설치하여 전문 법의병리의사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이나 대학병원, 종합병원, 법과대학 등의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을 실시하여 법의전문인력의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일반대학이나 국민들에게도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하며, 부검업무가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하루 빨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V. 요약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다는 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나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

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임규옥, 박희경, 이상한, 곽정식, 곽연식, 채종민.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안. 형사정책연구. 2003. 247-280.
2. 박희경. 대륙법 검시제도 고찰. 스코틀랜드의 경우와 비교분석.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2003. 11. 제327호. 115-125.
3. 양윤영, 박희경, 박정의, 이원기, 이상한, 곽정식, 채종민. 의과대학생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와 법의학 교육의 효과. 대한병리학회지. 2004. 165-173.
4. 문국진. 최신 법의학. 개정판. 일조각. 1994.
5. 김정아, 한길로, 황적준. 부검에 대한 일반 대학생과 의과 대학생의 인식도. 대한법의학회지. 1999. 20-34.
6. <http://www.gallup.co.kr>(한국갤럽조사연구소).
7. <http://www.naver.com>(백과사전)
8. <http://org.catholic.or.kr/chrc/durius/dis1.htm>(이윤성.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하이텔 법의학동호회. 1994.)
9. 이정식. 일개 대학병원 수련의들이 생각하는 부검에 관한 일반적 고찰. 경북대학교대학원. 2006.
10. <http://blog.naver.com/dnwjddos/20034851516>(이윤성. 바람직한 우리나라검시제도의 개선방향. 2001)
11. 곽정식, 채종민, 이상한, 최영식, 한길로, 이승덕. 사인 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법의학회. 2002.
12. <http://www.newshankuk.com>(뉴스한국. 대한민국 검시제도를 파헤친다. 2006. 7. 13)